

1997. 12.
제71회 정기회

19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
검 토 보 고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(전문위원 박 홍 표)

19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검 토 보 고

▶ 본 예산안은 1997년 12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□ 세입·세출예산 총괄

○ '97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총액이 86,132,11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3,788,451천원보다 2,343,663천원이 증액됨

- 일반회계 : 69,277,07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,215,076천원보다 2,062,002천원 증액

- 특별회계 : 16,855,03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,573,375천원보다 281,661천원 증액

○ 세입의 재원구성 - 단위 : 천원, ()안은 증감액

- 일반회계

· 지방세 ----- 13,233,786(872,705)

· 세외수입 ----- 26,418,312(869,681)

· 조정교부금 ----- 26,358,103(310,000)

· 보조금 ----- 20,121,913(291,277)

국고보조금 ----- 9,600,727(316,226)

시비보조금 ----- 10,521,186(△24,949)

- 특별회계

· 세외수입 ----- 12,938,823(54,465)

· 보조금 ----- 3,916,213(227,196)

국고보조금 ----- 2,248,330(181,757)

시비보조금 ----- 1,667,883(45,439)

○ 세출내역(단위 : 천원)

- 일반회계

· 경상예산	-----	28,706,333(21,200)
· 사업예산	-----	38,926,787(1,961,549)
· 채무상환	-----	401,322(0)
· 예비비	-----	1,242,636(79,253)

- 특별회계

· 경상예산	-----	143,314(0)
· 사업예산	-----	16,682,730(286,660)
· 예비비	-----	28,992(△4,999)

□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

○ 총액은 51,551,822천원(총세출의**60%**)으로 기정예산액 50,225,031천원보다 1,326,791천원 증액

- 일반회계 : 34,696,786천원(일반회계 총세출의 **50%**)으로 기정예산액 33,651,656천원보다 1,045,130천원 증액

- 특별회계 : 16,855,036천원(특별회계 총세출의 **100%**)으로 기정예산액 16,573,375천원보다 281,661천원 증액

○ 실·과·소별 세출예산액 내역 - 단위 : 천원, ()안은 증감액

- 일반회계

· 사회복지과	-----	4,602,110(△179,061)
· 가정복지과	-----	8,447,630(297,322)
· 환경보호과	-----	617,242(0)
· 청소행정과	-----	7,362,766(4,000)
· 위생과	-----	55,107(0)
· 지역경제과	-----	1,143,226(59,127)
· 지역교통과	-----	771,746(0)
· 건설과	-----	11,525,619(943,742)
· 건축과	-----	44,834(0)
· 지적과	-----	126,506(△80,000)

-특별회계

- 사회복지과(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)----- 2,825,721(222,197)
- 지역교통과(주차장특별회계) ----- 2,360,112(32,7300)
- 청소행정과(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)-10,568,160(26,734)

□ 검토의견(전문위원 박 홍표)

○ 197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·시비보조금 사업의 최종적 정리 및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

○ 국·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보조해주는,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타율적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, 일정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①전액 또는 부분삭감된 국·시비보조금의 이유 ②일정 비율로 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사업에서 국·시비의 삭감 후 구비의 편성비율 문제 ③반환금 계상의 사유 등에 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다음 예산 편성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

○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한 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바, 특히 국·시비보조에 의한 도로나 농로확포장 공사, 시설개보수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흑한기를 피하여 부실공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

○ 제출된 예산안이 철저한 심의를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